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14

발의연월일: 2020. 8. 13.

발 의 자:최인호·박상혁·박재호

강선우 • 전재수 • 김병욱

송옥주 · 이학영 · 조응천

권칠승 · 박광온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해당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및 초 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제43조제1항제6호의2・제112조제5항・제114조제1항제5 호의2・제125조제2항・제148조제2호의2 신설 및 제160조제3항・제161 조제3항 등).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면제"를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제112조의 제목 중 "면제"를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5호의2" 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제1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8호"를 "제1호, 제8호 또는 제9호"로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5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제134조제24호 중 "제125조제2항"을 "제1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35조제5항제9호 중 "제125조제3항"을 "제125조제4항"으로 한다.

제14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1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또는 비행을 하게 한 사람
- 2. 제1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16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 2.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거 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u>면제</u>) ①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u>면제 등</u>)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발
	급받은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
	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	증명의 취소 등) ①
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	
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u>제1호</u> 또는	না হ ন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 6호의2</u>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6의2.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7. ~ 31. (생략)

② ~ ④ (생 략)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저 증명 시험의 실시 및 <u>면제</u>)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중명등・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이하이 조에서 "자격증명의 한정(이하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7. ~ 3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 시험의 실시 및 <u>면제 등</u>)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발
급받은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
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등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제1호, 제5호의2
<u>.</u>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 17. (생략)

② ~ ④ (생 략)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저 증명 등) ① (생 략)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신 설>

5의2. 제1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 1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
명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u>③</u>
제1호, 제8호 또는

1. ~ 8. (현행과 같음)

제9호-----

9. 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 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다른

③ (생략)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 23. (생략)
- 24. <u>제125조제2항</u>에 따른 초경 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25. (생략)

-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생 략)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 8. (생략)
 - 9.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10. (생략)
 - ⑥ ~ ⑧ (생 략)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4조(청문)
<u>.</u>
1. ~ 23. (현행과 같음)
24. <u>제125조제3항</u>
25. (현행과 같음)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8. (현행과 같음)
9. 제125조제4항
10. (현행과 같음)
6 ~ (원 행과 같음)
제148조(무자격자의 하곳언무 좋

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3. • 4. (생략)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①・② (생 략)

③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 | 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 또는 비행을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⑦ (생 략)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② (생 략)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

사 등의	죄)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빌리거나 빌려 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등의 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1.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 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 람 또는 비행을 하게 한 사람 2. 제1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 격증명서를 빌리거나 빌려주 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 ④ ~ ⑦ (현행과 같음)

등의 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1.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 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비행을 한 사람
 - 2.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 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 선한 사람

④·⑤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